

제391회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1 호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12월7일(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87)
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96)
3.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34)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86)
5.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85)
6.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85)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39)
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19)
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69)
1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84)
1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36)
1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73)
1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11)
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74)
1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27)
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14)
1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86)
1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42)
19.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82)
2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92)
2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15)
22.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81)
23.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28)
2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40)
2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40)
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32)
2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62)
2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88)
2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04)
3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76)
3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33)
3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31)
33.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83)

3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36)
3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45)
3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61)
3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66)
38.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96)
3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95)
4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23)
4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68)
4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63)
4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18)
4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99)
45.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95)
4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26)
4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51)
4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12)
4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11)
5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53)
5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69)
5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65)
5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54)
5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756)

상정된 안건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7) 4
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6) 4
3.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4) 4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6) 4
5.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5) 4
6.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5) 4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9) 4
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9) 4
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169) 4
1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4) 4
1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6) 4
1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3) 4
1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1) 4
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4) 4
1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27) 4
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4) ... 4
1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6) 4
1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42) 4
19.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2) ... 4
2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2) ... 4
2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5) 4

22.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1)	4
23.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28)	4
2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0)	4
2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40)	4
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2)	4
2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2)	4
2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8)	4
2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4)	4
3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6)	4
3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3)	4
3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1)	4
33.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3)	4
34. 장애인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6) ...	4
3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5)	4
3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61)	4
3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6)	4
38.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6) ...	4
3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5) ...	5
4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3) ...	5
4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8) ...	5
4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3) ...	5
4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18) ...	5
4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9) ...	5
45.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5) ...	5
4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6) ...	5
4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1) ...	5
4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2)	5
4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1)	5
5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53)	5
5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9)	5
5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65)	5
5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4)	5
5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6)	5

(10시11분 개의)

○소위원장 박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김현환 문체부 1차관 참석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예.

○소위원장 박정 기획조정실장을 맡으시다가 1차관 오셔서 첫 공식 임무로 오늘 국회에 참석하셨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번 말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어제부터 문체부 1차관 임기를 시작한 김현환입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국회와 관련해서는 첫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기초실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체부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정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문체부 1차관, 문화재청 순으로 진행하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체부 1차관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7)
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6)
3.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4)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6)
5.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5)
6.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5)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9)
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9)
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169)
1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4)
1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6)
1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3)
1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1)
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4)
1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27)
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4)

1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6)
1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42)
19.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2)
2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2)
2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5)
22.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1)
23.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28)
2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0)
2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40)
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2)
2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2)
2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8)
2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4)
3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6)
3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3)
3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1)
33.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3)
3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6)
3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5)
3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61)
3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6)
38.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6)

3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5)

4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3)

4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8)

4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3)

4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18)

4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9)

45.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95)

4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6)

4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1)

4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2)

4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1)

5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53)

5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9)

5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65)

5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4)

5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56)

○소위원장 박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4항까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겸 위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의겸 위원 모두 아시다시피 ‘ABC협회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라고 문체부장관이 발표를 하고 새로운 정부광고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데 ABC협회를 근거로 하고 있는 유일한 법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역신문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신문법의 ABC협회의 근거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저는 이 법안이 쟁점 법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12월 중에 공고를 통해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문체부, 언론재단 그리고 신청을 해야 되는 지역신문이 어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속히, 당장 오늘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사분들께서 이 법안심사를 안건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김승수 간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승수 위원 오늘 안건은 여야 합의하에 이렇게 합의된 안건들이 올라온 사항이고 사실은 언론·미디어 관련되는 법안들은 미디어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가 상정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정 그러면 다음번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그러면 소위 심사자료 1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되겠고, 2페이지 법안은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인데,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건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양한 정부 정책의 기본계획 포함 사항에 방역 관리 대책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되겠고요.

의사일정 1번 법안에서는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여가 시설의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여가시설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8개 법률은 해당 기본계획의 내용에 감염병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작년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수석전문위원

의 의견과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어기본법 개정안 제27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외에 특별자치시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으로서 명확한 법 해석을 위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여줍니다.

참고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별 법률에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명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자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 청문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시에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여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예.

○김승수 위원 앞서 임오경 의원 법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도 감염병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내용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같은 성격의 법입니다. 뒤에 5번, 또 그 뒤에도 여러 법안이 있지요. 같은 법안들을 한꺼번에 같이 심의·의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예, 4항 한 다음에 5항부터 쪽 같이……

○김승수 위원 뒤에 몇 개 더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의견이 없으면 항목만 말씀해 주시고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4번 그리고 5번이 동일한 취지의 임오경 의원 발의안이기에 때문에 의결 취지를 감안해서 이것은……

○김승수 위원 그 뒤에도 몇 건 더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예, 뒤에 한꺼번에 그러면……

○소위원장 박정 예, 일단 좀 찾아 주시고요.

○김승수 위원 19번, 22번……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19번, 22번 여기까지 동일한 취지……

○김승수 위원 28번, 29번 다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22번 같은 경우는 대안으로 나중에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개별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지금 말씀드린 안건은……

○소위원장 박정 19, 28, 29.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예.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그러면 11페이지, 6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의결을 안 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예.

○소위원장 박정 일단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 제4항과 19항, 28항, 29항에 대해서 동의해 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항, 28항, 29항, 각각의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9항, 28항, 29항이 내용이 비슷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위원장님, 지금 5항 포함을 해 주셨나요?

○소위원장 박정 5항은 안 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위원장님, 5항하고 6항이 동일한 독서문화진흥법이기 때문에 2개 법안은 대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안 의결을 해 주시면 안 되고 6항하고 같이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정리 다시.

아까 4항, 19항, 28항, 29항은 두들긴 대로 하고 5항, 6항은 대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것 논의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예.

○소위원장 박정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건의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5항은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6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 외에 특별자치시장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

는 것으로서 더 명확한 해석을 위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2건, 앞서 임오경 의원안 5항과 6항을 대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6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항국어기본법에서도 같은 내용인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예.

○소위원장 박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건의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2건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먼저 1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에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콘텐츠 산업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고려할 때 지역 문화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에, 올 5월 달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제16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제16호를 제17호로, 그리고 현행 제17호를 제18호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다만 이게 어차피 대안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8항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예.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17페이지를 봐 주시면 개정안 제58조의3에서 어려운 법률 용어에 해당이 되는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속행’에 비해 ‘계속 진행’이라는 용어가 알기 쉽고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점에

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속행’이 ‘계속 진행’의 뜻이
요?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예, 그런……

○소위원장 박정 빨리 진행한다, 속행하라 이런
것도, 애매할 수 있으니까 더 명확히 하는 결
로……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오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라는 표
현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정부 측 의견, 아까 동의한다
고 그러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예, 동의합니
다.

○소위원장 박정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2건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2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주체를 한국문화예
술교육진흥원으로 명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
용 안정성 확보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관
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정의견 사항으로, 개정안이 학교예술강
사의 채용 주체를 진흥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흥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0조제4
항에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수석전문위원
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6건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
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6건을 일괄해서 설명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18조제5호의2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문화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의
용자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용자사업은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
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개
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그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
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안 제17조의2는 예술인의 용자사업에 대한 회
계처리는 다른 사업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구분하
여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술인의 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의 경우는 용
자 원리금 상환 등 용자금 재원 관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문화예술기금 내의 타 사업과 회계처리
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명호 의원안 제7조제5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
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써 앞서 살펴본 취지와 동일하다고 하겠
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박정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 제9조제1항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건축주의 의무를 명시하는 규정으로, 개정
안은 ‘일정 금액을 사용하여 미술작품을 설치하
여야 한다’로 문구를 수정하여 건축주의 의무 행
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
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비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관
리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 등은 미술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은 건축주에게 조치 이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적절한 관리를 통한 건축물의 문화적 이미지 강화와 또 지역 주민의 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 제9조의2 제4항,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조치 등을 이행하는 경우에 건축주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행 법령상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의무자이자 또 관리 의무자인 점을 고려할 때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경비 지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의무적으로 공모 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작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술작품의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3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도지사 등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으로, 건축물 미술작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및 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현행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등 이외의 사항으로 미술작품 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이상헌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 활동 단체 육성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재적 학생 수가 감소 추세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상헌 의원안으로서 44페이지를 보시면 안 제2조제1항제4호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 제15조의4에서 임산부 등까지도 문화이용권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정의에서 문화소외계층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의4제1항은 수급권자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지급되는 문화이용권을 임산부, 8세, 19세, 65세에게도 지급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문화권을 확대한다는 측면과 함께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처 의견은 대립되고 있는데, 문체부는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이에 반해서 기재부는 재정 부담 우려, 법제처는 특정 연령이 아닌 연령 범위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의4제2항은 문화이용권의 수급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를 장애인등록 정보 또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확대를 하고 또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동안 가맹점의 폐업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서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쪽입니다.

박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 중에 제9조의2제3항입니다.

제3항 부분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건축주에게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일단 ‘주민의 신청’ 앞에 ‘시·군·구청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근거 중 하나로 주민의 신청이라든지 민원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말을 안 넣어도 포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명시해 놓으면 오히려 주민 신청이 너무 남발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내용을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3항 2호 부분에 건축물 미술품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보수, 철거 또는 재활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개정안은 잡혀 있습니다만 재활용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기존 작가의 작품을 다시 재활용할 경우에 다른 타 작가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재활용' 관련 내용을 삭제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4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고 건축주에게 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무를 이행하는 데 경비를 지원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반대도 있고, 문체부의 대안으로는 경비 지원 대신에 오히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항에 만약에 주민 의견 청취나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문체부의 지금 말씀드린 그 안으로 바뀐다면 이 내용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박정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거 나머지 다 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이거에 대해서 하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제가 낸 법이라 의견은 충분히 우려할 점은 이해했고요.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또 부담을 주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히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에 지원도 빼지만 과태료도 빼는 형태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후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만을 마련하는 정도.

정부 측 의견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예, 동의합니다.

○김승원 위원 저도 좀 질의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박정 예.

○김승원 위원 차관님, 이게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설치되는 예술품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예, 맞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게 오래되면 낡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파손된 경우에 그래서 굉장히 보기에 안 좋은 미술품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관리는 법에 의해서 하고 보존은 건축주가 개인적으로 할 의무가 지금 있는 겁니까?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이 제도는 1995년에 도입돼서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초기에 설치된 작품들이 노후화된다는 보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해서는 지금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 주신 내용들을 반영한다면 이것을 현장에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원 위원 사실은 이것 건물 소유주한테 관리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근거가 혹시 어디에 있는지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그 미술품 자체가 건축주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렇지요. 근데 이제 그 소유를 자기가 관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소유자 마음인데 그걸 갖다가 의무화까지,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을,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꼭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유권을 포기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15조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미술품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시행령에 들어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철거되는 경우에 그런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지금 그 예에 철거·훼손·용도 변경·분실, 이게 예시가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시행령에 있

습니다만 지금 개정안대로 한다면 그 내용이 법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김승원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일정 규모 건축물에는 미술품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미술품이 없어지게 되면 또다시 설치를 해야겠지요.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예컨대 그것이 조금 파손되거나 그런 경우에 이것을 다시 원상회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조항은 미묘한 차이지만 분명히 틀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의무 조항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막 관리 안 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그 사전적인 법적 의무가 없는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반대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저는 지원 대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 건축물 60%가 지금 이런 관리가 소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원은 법을 내신 위원장님도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정** 예.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저희 지역에 보니까 한 3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그 안에 건설 당시에 이런 예술품들을 막 갖다 놔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안전사고로 많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기금으로 자기네들이 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 그러면 이 법에 대한 발의를 요청해 왔는데요.

기재부는 이게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갈 거더라는 이유가 많이 들어간 거고 또 차관님께서도 시행령에 이미 유지 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으니 이걸 법령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관리 주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왜 정부가 돈을 주냐 이런 기재부 반대까지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예.

○**소위원장 박정**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지자체나 이런 데서 또는 아니, 지자체가 아니라 건물주들이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면서 계속 이 관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라 이렇게 요구가 많아질 것에 대한 정부 측 부담이 있다, 지자체적 부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예.

○**소위원장 박정** 그래서 일단 저도 이 정도는

그냥 기재부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이걸 뚫을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들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옮겨 놓는 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들, 여기 지원의 대상 말고도 다른 또 개정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그 정도에서 통과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사실은 건물주에게는 설치 의무가 있지 그것이 조금 훼손되거나 그런 경우에 다시 원상회복 의무까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건 그 법안을 내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용인을 하신다면 그러면 저도 그 선에서 개정안, 그러니까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 이 부분은 사실 현장에 가 보면 상당히 필요한 그런 규정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발의하신 박정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셨듯이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법사위에서 통과될 거냐 안 될 거냐, 그 지원과 관련해서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빼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태료도 삭제를 하고 지원도 삭제를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차관님, 지금 건축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을 때 불응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현재는 그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게 굉장히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응해서 그런 경우에 국가나 지자체가 대집행을 통해서 철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없습니다마는 지금 개정안에 보시면 2항 같은 경우는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도 이게 최소한 실효성이 있으려면 지원을 통해 가지고 건축주가 어느 정도

자부담을 통해서 또 지원을 통해서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해서 강제하든지 아니면 건축주가 불응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집행을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든지 이런 수단이 아무것도 없으면 굉장히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처벌적인 규정을 넣는 데 부담이 있으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법사위 통과 여부를 걱정하기에 앞서서 일단 문체위 정도에서는 경비 지원에 대한 규정은 같이 포함해서 가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근거를 ‘지원할 수 있다’ 정도 할까요, ‘지원하여야 한다’ 말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현재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소위원장 박정 그러니까 상황 판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어떠세요? 말씀하신 몇 가지들은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하면……

○김승원 위원 경비의 일부로요?

○소위원장 박정 예.

○김승원 위원 저는 팬츠를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그러면 건축주 본인들도 관리주체가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판단에 의해서 또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 놓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리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지금 이견이 있었던 ‘건축주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와 관련해서는 ‘건축주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남은 쟁점은 45페이지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말씀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 15번에 앞서 14번, 저도 취지에 는 일단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는가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야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그 밖의 학생들은 어떻게 파악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까?

차관님, 학교 밖 청소년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자료 42쪽에 보시면요 학교 밖 청소년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여가부 소관 법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전체적인 자퇴·퇴학 이런 학생들의 수치를 통계적으로 잡은 것이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연락이나 계속적인 접촉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 말이지요. 어떻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느냐, 방법이 있느냐 그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현재 법 내용은 저희들이 각종 지원책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도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정안에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 하여튼 저는 취지에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법에 이렇게 규정을 넣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고 하면 그런 쪽의 사전 조사라든지 대책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예, 여가부에서 기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부와 협업해서 그것들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15번 항목과 관련해서는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 확대입니다.

저는 특히 사회적 약자, 저소득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대해서는 늘 주장했던 바라 가지고 기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적용 대상을 연령별로 특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종성 의원께서 제안했던 임산부를 포함하는 안은 이미 가결되어서 문체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도 병합해서 논의하는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5번 법안은 일단 보류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한 후에 법안 내용을 좀 더 정제해서 다시 상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정부 측 의견 있으세요, 김승수 위원님 의견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문체부 의견은 사실 문화향유권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만 타 부처 의견도 있고 해서 김

승수 위원님 제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정 그러면 15항은 보류하고 나머지는 하면 되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5건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자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인 “향유”, “향수” 또 “재료적치장”을 우리말인 ‘누림’과 또 의미를 풀어 쓴 ‘재료를 쌓아두는 곳’이라는,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분도 해당 법률이 금년 3월 달에 법률 개정으로 제28조제1항이 추가가 되면서 “향유”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정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 “재료적치장”을 ‘재료를 쌓아두는 곳’ 이런 용어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문화예술 누림 기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오히려 문화예술 누림 기회가 더 어색하다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지요.

이런 용어를 씁니까? 문화예술 누림 기회, 들어 본 적 있으니까?

○소위원장 박정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누림’이라는 말은 사실 순우리말이고 ‘문화 누림’을 그동안 ‘문화 향유’라고 계속했기 때문에 다소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공공부문에서부터 우리말 쓰기를 좀 더 확대해 간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 저는 너무…… ‘문화예술 누림’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번에 처음 듣는 그런 용어란 말이지요.

○소위원장 박정 언론인 출신 두 분 중 한 분이 의견을 내주시지요?

○최형두 위원 김의겸 위원님이 잘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김의겸 위원님.

○김의겸 위원 저도 차관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다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한자문화에 익숙해 있고 외래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또 국회가 앞장서서 고쳐 나가면 국민들도 곧 따라서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 김승수 위원님, 수용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 최형두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이게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면 ‘누림’이라는 형식의 명사형으로는 사실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 익숙한 단어는 아닌데 뜻은 충분히 좋습니다. 이게 ‘누리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누림이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아는데 과연 일반적으로 그럴까, 한자어를 많이 줄이고 순우리말로 대체하면 좋은데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체부에서 국어 쪽 파트도 있고 하니까 한번 의견을 조회해 보면 좋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법안들에도 보면 향유, 향수…… “향유”를 쓴 법안들이 사실은 50개도 넘습니다. 제목에도 한 두 군데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보류하고……

○소위원장 박정 그러면 “향유”에 대한 부분은 놔두고요. “재료적치장”을 ‘재료를 쌓아두는 곳’이라는 용어 순화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2건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예지 의원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재단의 사업에 이와 같이 창작활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정주 의원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기금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추가하고 있는 것에 맞춰서 해당 사업의 범위에 동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이견이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예지 의원안에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이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해 가지고 창작활동 지원은 법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규정을 반복할 필요 없이 이 조항 자체가 사회보장이나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구를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으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정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2건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60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또 법 규정의 명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부터 23항까지 3건의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먼저 이병훈 의원안은 아까 “향유”를 ‘누림’으로 고치는 부분은 보류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임오경 의원안은 받아들이되 이 대안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명호 의원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문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청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까지 2건의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에 대해서는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6항까지 3건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먼저 김승수 의원안입니다.

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또 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할 의무를 규정하며 또 콘텐츠산업 진흥 시책 수립·시행에 있어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등이 적극적 정책 집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입법례 등을 참고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71페이지를 보시면 조문 순서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기본이념 뒤에 두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입법례임을 감안할 때 안 제2조의 2를 제3조의2로 수정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김예지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적극적·체계적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19조는 산업 진흥에 관한 조문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안 제19조제2항은 이용자 보호시책 등에 관한 제5장에서 제26조의2를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상헌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이상헌 의원안 개요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확대하고 콘텐츠분쟁조

정위원회에 중재, 집단분쟁조정 등의 기능을 추가해서 현행법상 분쟁 해결 방안을 다양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괄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직권조정, 합의권고, 집단분쟁조정, 소송절차 진행 중지, 중재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소송 외의 분쟁 해결 방식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개요가 되었고요,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를 보시면 참고자료 2번에서 개정안에 따른 콘텐츠 분쟁조정 절차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개정 후’라고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신설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중간에 보시면 합의권고 또 직권조정결정 그리고 오른쪽에 중재신청 그리고 맨 아래에 집단분쟁조정 제도 등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8페이지, 조문별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9조부터 제29조의4까지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에 따라 명칭을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고 또 현행법 제29조에 규정된 내용을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위원의 신분보장, 조정부의 설치 등으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조정·중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3항 등 나머지 그 이하의 조문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었고요.

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29조의2는 조정·중재위원회의 규모를 30명 이하의 위원에서 50명 이하로 확대하고, 위원을 비상임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또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연임 횟수의 제한을 삭제하는 등 종합적으로 조정·중재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이 중에서 특히 위원회의 적정 위원 수에 대해서는 현행 조정위원의 업무 부담 또 개정안에 따른 중재 제도의 신설 여부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29조의2제2항제2호는 위원회의 준사법적 기능이 강화된 만큼 ‘10년 이상’이라는 법조인의 경력요건을 추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에서는 법조인의 자격을 10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타 입법례에 비해 경력요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4항은 위원을 비상임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연임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을 상임으로 둘 수 있도록 비상임 제한 조항을 삭제할 것인지 여부 또 연임 횟수 제한을 폐지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29조의3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준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29조의4는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고 조정부에서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정부의 결정이 준사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개정안과 같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또 이에 대한 수정의견으로서는 조정부의 결정을 조정·중재위원회의 결정으로 간주한다는 점도 법령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제33조 이하는 조문 순서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33조제5항은 조정안을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소액분쟁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중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조정의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 외의 해결책이 부재한 실정이므로 조정예정가액 등을 고려할 때 직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등에는 직권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는 저작권법의 입법례에 따른 것으로서 자구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조정의 효력과는 별도의 내용이고 합의권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임을 감안할 때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해당 조문은 제33조의3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에 대한 수정의견은 88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33조의2는 조정·중재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합의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서 합의 후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분쟁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33조의3은 이용자의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경우 조정·중재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분쟁조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대표당사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절차 출석 부담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으며, 사업자 입장에서 일괄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등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입법례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체계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34조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조정 사건 절차 진행 중에 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조정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사업자의 소 제

기로 분쟁조정 절차가 중지되면 이용자는 피해 구제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수소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용자 피해구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95페이지 개정안 제36조의2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정의 경우 조정절차의 참가나 조정안의 수락 여부에 대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반면, 중재는 당사자 간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 절차에의 참가가 의무적이고 또 중재인의 판정에 강제적으로 구속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중재 기능을 수행할 경우 중재제도 접근성을 제고하고 또 분쟁 해결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안 제36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조정부와 마찬가지로 중재부의 구성 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고 또 중재부의 결정을 조정·중재위원회의 결정으로 간주함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36조의2제4항과 관련해서는 제1항에 중재부를 둔 취지에 따라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입법례를 참고해서 중재인의 선정 절차에 대한 합의는 제외하고 중재부의 선택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또 수정의견으로 같이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0조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확대함에 따른 자구 정리가 되겠고, 그 이하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다만 99페이지를 보시면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31조와 관련해서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조항이 중재에도 적용됨을 명시하는 부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는 분쟁조정과 관련해서 중재 부분이 빠진 부분을 보완하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나머지 그와 유사한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두 군데만 빼

고 나머지는 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2항 2호의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의견에 대해서 문체부는 10년 이상 경력자는 경력 요건이 과도하다고 생각해서, 현행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과 동일하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83쪽입니다.

아래쪽에 문체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연간 신청 건수나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상임위원을 2명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시 80쪽으로 가시면 80쪽의 29조의2 1항 부분을……

○소위원장 박정 상임위원을 집어넣는다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저희들 수정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고쳤으면 합니다. ‘조정·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이렇게 고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24·25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예.

○소위원장 박정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 차관님, 26항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중재 기능을 도입해서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건데, 정부 측에서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어떤 논의 절차를 거쳤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업무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내용인데 의원입법입니다마는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으면 아니면 발의 과정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논의를 진행했었는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정 토론회 같은 것 하셨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양해해 주시면 지금 담당 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예.**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 김용섭** 문화산업정책과장 김용섭입니다.

저희가 콘텐츠 분쟁 신청이 20년도, 최근에 급증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조정성립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난 20년에 연구용역으로 콘텐츠 분쟁해결 기능강화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상헌 의원실에서는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콘텐츠 분쟁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내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용역은 했지만 용역 결과에 대해서 토론회라든지 논의 과정을 거친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 김용섭** 예, 토론회를 따로 거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김승수 위원** 왜냐하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토론 논의 과정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보류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김승원 위원** 저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예,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한 해 조정 신청 건수가 1만 70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로 제일 많은 게 어떤 건가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오고 있는데, 저작권 관련 문제인가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76쪽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표의 맨 왼쪽 조정 접수 보시면 조정 접수량이 최근 들어서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이 불능되거나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어서……

○**김승원 위원** 차관님, 제 질문의 요지는 어떤 내용의 분쟁이 가장 많은지 그걸 여쭙 보는 건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장르별로는 게임 분야가 92%, 영상 분야가 4.8%, 만화 캐릭터가 1%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입니다.

○**김승원 위원** 주로 저작권 관련된 분쟁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예,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불만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 조정이 좀 더 효력이 있으려면 중재제도가 도입되는 게 굉장히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마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수렴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더 본격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니까 옳으신 말씀이고 어차피 여기 소위 계신 분들이 다음에라도 또 검토를 하실 거라 기본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문화예술소위에 갑자기 소송법이 쑥 들어왔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제도고 조정제도, 중재제도를 그대로 본떠와서 어쨌건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요소 요소에 숨어 있는 함정 같은 게 좀 있어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게 하고…… 중재라는 것은 한번 중재부로 들어오면 거기서 결정하는 것에 승복하고 재판할 여지 없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게 되는 그런 건데 연임을 가능하게 하면, 예컨대 지금 3년이다가 1회 연장이면 6년인데 6년만 해도 상당한 파워를 갖고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만약에 연임이 없어진다면 6년 9년 12년 이렇게 계속해 버리면 거의 기득권 세력 비슷하게 완전히 콘텐츠 분쟁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 연임 제한 철폐 규정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6년 정도만 해도 충분히 봉사하신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재는 진짜 중재부 안에 들어오면 다른 데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 버리는 건데, 거의 원 샷

원 킬(one shot one kill)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강자가, 갑이 을한테 ‘우리 중재부로 가자’고 강요를 한다든가 혹은 재판으로 가는 중재로 가는 갑한테 선택권이 주어지면 갑은 을에 대해서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중재부 위원들과 어떤 친분을 쌓게 된다든가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제대로 소송도 못 해 보고 그냥 중재로 끝나 버리는, 그래서 피해구제를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것은 김승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좋은 면도 있고, 빠른 분쟁 해결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들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예.

○김승원 위원 그다음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때 대부분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들어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1만 7000건의 분쟁 중에 저작권 관련 변호사들이 양측에 동등하게 서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싸움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변호사가 있고 아니면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약자들이 조정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덜컥 조정을 해 버렸는데, 33조의2에 보면 조정조서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 역시 ‘아차’ 혹은 법을 잘 몰라서 덜컥 조정한 을에 대해서 더 이상 피해 구제의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효력을 두려면 법관같이 진짜 공정한 사람 앞에서, 공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거나 아니면 양측이 충분히 저작권 관련된 내용에 정통한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거나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큰, 어마어마한 효력을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현황이랄까 저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중재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소위원장 박정 다음 법안도 있어서 좀 정리를……

○김승원 위원 예.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줘서 실질적인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약자들에게 갑자기 구제받을 수 없는 또 다른 피해가 양산될 수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말씀 주신 것 바탕으로 좀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저 역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을 내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정위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예.

○유정주 위원 그러나 현실은 매출 100억 미만 이 많은 문화예술콘텐츠계라는 이유에서 공정위에서 분쟁과 조정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쟁에 대한 문화예술인이 기댈 수 있는 장치가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안전장치로라도, 이 법안이 지금 현장에서도 굉장히 원하는 법안이고 앞으로 더 개정해 나간다면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하여간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회 등등 해서 이상헌 의원실 중심으로 빨리 이루어지고 다음 법안 소위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해 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 2건의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다음 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32항까지, 6건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먼저 김승수 의원안입니다.

현행법은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공연”으로 정의하고 공연의 예시로 음악, 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뮤지컬을 공연의 독립된 분야로 명시함으로써 뮤지컬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뮤지컬의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다음, 임오경·이병훈·백종현·김철민 의원안

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병훈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는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권 보장과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계당국의 관리감독과 관계자의 주의 노력을 제고하여 공연인력에 대한 생명·신체의 위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1조는 안전한 창작환경 향유의 주체를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서 ‘공연예술 작업자’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 이외에도 ‘공연법상의 공연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에 임오경 의원안은 앞서 설명드린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두 번째 임오경 의원안은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과 관람자의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병훈 의원안은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연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공연장과 공연예술인 및 관람자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가장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중에서 이병훈 의원안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안 제10조의2는 무대예술 전문인 등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권리를 가지고 공연장운영자 등은 이를 보장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은 안 제10조의2는 안 제1조의 수정의견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예술 작업자’ 외에 ‘공연자’를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의2는 안 제10조의2제2항에서 ‘공연장운영자등’을 약칭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기 때문에 체계상 ‘공연장운영자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피난안내 의무 주체 확대와 관련해서 각 개정안은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관람자에게 피난 절차 등 피난 안내를 주지시키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개최되는 공연의 경우 다수의 관람자가 밀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개정안 중 제1항은 피난안내 주체를 현행과 같이 “공연장운영자”로 하고, 제2항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려는 자’로 구분해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며, 이를 감안할 때 개정안 중 김철민 의원안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의6은 중대한 사고 범위에 포함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연장운영자 등에게 안전사고에 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사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수집을 통해 사고 원인 파악 및 후속 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의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안전한 공연문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대한 수정의견으로는 안 제12조의6 제1항제1호에 ‘안전진단기관’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오타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이병훈 의원안 제12조의7은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연장의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전국 등록공연장의 기본 정보 및 안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안 제43조는 안전관리조직 미운영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면 공연장운영자 등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 제3항제2호 및 제3호는 이미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안 제3항제4호 및 제5호는 개정안에 따라서 새로 신설되는 사고보고 의무, 자료제출 의무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2항까지 6건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정상 33항과 34항을 할 차례이나 순서를 좀 바꿔서 35항과 36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 2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먼저 35항 임오경 의원안입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의3은 장애인이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편의 및 프로그램의 제공 등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시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150페이지, 최형두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 및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지방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

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문화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 문화 수요라든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고, 문체부는 대통령령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문체부 입장에서는 최형두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 취지에는 동의를 하나 그 방법에 있어서 설치 기준을 정하고 일률적으로 그것을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의무화한다는 의무규정으로 해 놓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반대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최형두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정부의 고민이라든가 걱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사실은 2년 동안 창원시와 경남도의 큰 여망을 받아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한번 유치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부의 고민도 이해하고 기재부의 고민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요는 뭐냐 하면 이런 임의 규정이 오히려 정부로 하여금 지역 문화분권에 대한 추진에 상당히 소극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국립박물관은 경남에도 두어 군데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은 뚜렷한 수요가 생기고 큰 발굴지가 생기면, 유물이 생기면 국립박물관을 두기 때문에 국립박물관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지금 서울과 과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군데 지역에서, 결국 권역별로 될 텐데, 수장고 형태로 아마 확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장고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전의 수장고의 의미 이걸 현대미술이나 유적, 유물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분배도 좀 필요할 테고, 그래서 정부가 걱정하는 대목에서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지역에 둘 것이냐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일 텐데, 시행령에……

우리가 항상 투자라든가 큰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짤 때 권역을 나누지 않습니까? 수도권 또는

충청권 이렇게 권역을 나누는데 권역별로 검토를 하게 하고, 지금 사실은 문체부의 기본계획 속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아마도 대구·경북권 또 호남권 또 남동부권 이렇게 해서 분권으로 가 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크게 인구로 보더라도 인 구 한 1000만 단위씩 하는 이렇게 최소한의 기준 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사실은 문화분권이라든가 또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미술관의 필요성은 절대적입니다. 서울에는 수많은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이견회컬렉션의 서울 설치 문제가 지역민들의 커다란 절망과 분노를 가져왔 는데 차근차근 대전은 충남도청을 이용하고 대구 는 경북도청을 이용하고 광주는 전남도청, 아시 아문화전당을 이용하는 그런 계획들이 충분히 가 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동남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권에 저희들은 국립현대미술관을 하겠다는 것 이고.

이게 그냥 국가 예산을 나눠 먹자는 게 아닙니 다. 사실은 충분히 그만한 자격과 노력을 뒷받침하 는 기준을 엄밀히 세워서 그에 적합한 국립 문화 시설의 분산과 분권을 그래서 문화분권을 국민들 이 향유하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미술 관·박물관 문화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 획을 밝히고 있지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예.

좀 전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형두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박물관과 미 술관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 습니다.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유물이 40만 점 이 있고 매년 10만 점 가까이가 발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박물관들이 만들어지기가 용 이하고 실제 열세 군데 지방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관 같은 경우는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이 약 9000점 정도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물관과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에 국립미술관을 세우 는 것도 있겠지만 공립이나 시립미술관을 지원하 면서 문화향유 기회를 늘려 가는 이런 방법이 있

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저희들이 정부 예산 을 40%, 50% 미술관 건립하는 데 지원하면서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권역별 고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의무규정이 아니더라도 현재 기준을 갖고도 추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의무규정을 해서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형두 위원 차관님 그 말씀도 이해가 되는 데, 그런데 이 규정 때문에 기재부가, 제가 예상 당국하고 2년 동안 협의해 본 바에 따르면 이것 아주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기에 좀 구체적인 어떤 기준을 뒤서, 박물관이야 말씀 하셨다시피 국가적인 유물이 발굴되면 소장할 곳 이 필요하니까 분명히 하는데……

지금 공립을 이야기하십니까만 국립과 공립의 수준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문화분권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어떤 투자, 국가적인 집중이 필요하고 그것은 모든 곳에 골 고루 나눠 주는 게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일정 부분 어떤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 모범이 그 지역 과 다른 지역의 공립에 또 큰 영향을 주고 또 네 트워크로 가는 그런 발전 전략이 가능하다고 보 고요.

예컨대 경남의 경우에는 100만 명당 미술관이 국공립, 사립 다 포함해서 2.69개입니다. 전국 최 하위입니다, 현재 있는 시도 중에. 심지어 미술관 이 하나도 없는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와 같 은 쏠림 현상이야말로 정말 이 정부의 정책과도 역행합니다. 어떻게 국회하고 정부, 심지어 청와대 까지도 다 지역을 옮기면서 왜 미술관은 모두 서 울로 서울로 집중을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팬데믹을 보면서 또 새로운 팬데믹이 오고 하면서 집중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OECD 국가 중에 이렇게 수도권과 서울에 인구가 집중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떠나는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 이유가 변변한 문화시설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 다. 그 문화시설의 핵심이 예술이고 예술의 핵심 이 또한 미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하면 대충 우리 인구가 5000만이니까 서울과 수도권 1000만, 2000만 해서 이미 서울은 다 갖췄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00 만이 있는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국가가 어

면 큰 지침, 큰 모범을 보여 주는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의 의지, 문화분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그 시설을 권역, 인구 단위로 해서 그에 걸맞은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아무 도시나, 아무 곳이나 똑같이 나눠 달라고 이야기를 못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국립현대미술관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문화적 수준의 상향을 이룰 수가 없을 테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화부야말로 이런 문제에서는 ‘둘 수 있다’라는 이런 임의규정 대신에 ‘두어야 한다’ 하고 그 기준을 엄밀히 함으로써 문체부가 강력한 문화국가 또 문화예술국가, 미술국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법안에서 지금 현재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두어야 한다’라고 하고 단 그것이 지역문화 균형발전의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한대라고 하면 굉장히 문화부가, 우리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국립현대미술관을 통해서 정말 조속히 추진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2년간 해 본 바로는 또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도 해 보셨겠지만 이 규정 때문에 그러니까 국립미술관, 국립시설을 모든 지역이 다 달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다 같이 똑같이 나눠 먹는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수준 있는 국립시설을 각 권역별의 어떤 핵심 지역에 함으로써 그것이 각 권역별로 이른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를 일으키고 네트워크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방식의 전략을 위해서도 저는 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이웃 나라를 보더라도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이런 시설이 수도에만 집중된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오사카, 교토 이런 데에 도쿄 못지않은 국립 현대시설이 있고요.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경우도 작은 도시까지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현대미술의 장르에 따라서 뉴욕 같은 곳에 여러 곳에 국립미술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문체부가…… 정말 우리나라가 인구 5000만에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을 넘는 30-50클럽 일곱 번째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가로서 뚜렷한 문화적인…… 백범 김구 선생이 이야기하셨듯이 정말 문화 대국으로서 우뚝 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문화 전략을 구사해야 되고……

저는 그 문화 전략의 핵심 전략으로, 핵심 대목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특히 동남권 지역의 국민들이 그렇게 여망하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이것이…… 아마 이런 똑같은 모델이 대구·경북권 그다음에 호남권·충청권도 수장고 형식이라든가 현재 경북 구 도청들을 중심으로 한 기획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경북하고 대전하고 광주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예.

○소위원장 박정 위원님, 조금만 정리해 주시지요.

○최형두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자구 하나 차이입니다. 자구 하나 차이인데…… 그리고 이 자구를 바꿈으로써 해서 무한정 그러자는 것 아니고 오히려 그 단서조항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엄밀한 규정을 둬으로써 이미 30-50클럽 7대 문화대국으로 발돋움해야 될 우리나라의 뚜렷한 문화적 지향점을 만들어 주는 이정표를 하나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 법안에 꼭 좀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정 이 법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다음번에 문체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지방이 부담스러우면 권역별이라든지,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항을 준비해서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예.

○소위원장 박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항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고 다음번 회의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33항과 34항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3항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자료 134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제3항은 국가 등이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등을 수립 및 시행할 때 농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할 책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책의 직접 당사자가 공감하는 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와 같이 일부 자구를 자연스럽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안 제16조제3항은 국가 등이 중요 정책 발표 현장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어 통역을 지원하도록 하고 또 정보통신망 등에 해당 정책의 영상을 공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인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어순을 조정하고 일부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4항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김예지 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것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그러면 김예지 위원님.

○김예지 위원 정부 측 의견하고 전문위원 의견 안 읽어 주셨는데 제가 이미 보고 왔습니다. 그

래서 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2항과 3항…… 한 항은 지금 수정 수용으로 되어 있지요?

○소위원장 박정 예.

○김예지 위원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곤란하다고 하십니다, 그렇지요?

○소위원장 박정 창작물 우선구매 의무화에 대해서……

○김예지 위원 수용 곤란이시지요?

○소위원장 박정 정부 측……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예, 수용 곤란입니다.

○김예지 위원 그 이유를 제가 살펴보니 장애인예술인과의 경쟁 제한 우려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주셨더라고요. 우선 이 법안은 장애인 예술인의 복지에 관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기본법적 특성도 있지만 특별법적 특성도 있는 법안임을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있었던 장애인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예술인은 예술 작품의 창작과 발표 기회 부족이 있었고 예술 활동에 따른 적절한 경제적 보상의 미비 등으로 재능을 발휘할 기회의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가운데서도 장애인 예술인이라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던 거고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 복지가 더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술 관련 법이 있습니다만 장애인 예술인이 가진 특별한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우선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차관님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장애인 예술인은 정책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예술인을 전문 예술인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습니다. 낮고 그래서 더 어려움은 커지고 있고요.

최근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진행한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장애인 예술인 중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답변이 72.3%에 이르고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인 예술인 비중이 상당히 높습

니다.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부 역점 정책 1순위를 여기서 평가했는데요. 장애예술가 및 장애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꼽힐 만큼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지금 장애문화예술원 통해서 문체부에서 실태 조사하시고 계시지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예.

○김예지 위원 그것을 왜 이제 하십니까?

장애예술인들의 생산 활동은 활발합니다. 진행하고 있지만 그 반면에 이를 소비자인 고객에게 연결시켜 주는 판매 중심 마케팅이 전무합니다. 이에 장애예술인의 생산품에 대한 판로 개척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기 예술인 지원법에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선언적인 내용들은 있지만.

그래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문화예술 생산품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구매제 도입이 그 첫걸음이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인데요. 우선구매라는 그 방법론이 가진 문제점을 말씀드리려 보겠습니다.

우선구매는 보통 대량 생산되는 공산품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우선구매가 이루어집니다, 장애인이 생산하는 그런 공산품. 예를 들어 A4 용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김예지 위원 그것은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방안이고요. 복지위원회가 법안 소관 상임위지요. 그래서 거기에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문화예술을 다루지요. 그래서 문화예술 생산품이라고 하지요. 예술 노동자입니다. 예술 노동자가 생산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술 작품이겠지요.

차관님, 예술 노동자가 생산한 게 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예술품입니다.

○김예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를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는 공산품에 대해서 우선구매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김예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시도입니다. 예술 쪽에도 그것을 적용해 보자는 취지인데, 이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렸고요.

○김예지 위원 하시면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이것 대신에 저희들이 제안드리는 방법론은 조항에다가, 기본 계획 수립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공예품·공연 등 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문화예술 창작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사업 지원’ 이렇게 명시해 가지고 법안에 넣어서 지원으로 풀어 가야지 우선구매 제도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김예지 위원 홍보 및…… 그것을 부처에서 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말씀드렸다고 생산되고 있는 예술 작품들을 소비할 만한 마케팅 전략 같은 것이 이 방법으로 인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문화예술계에서 지금 배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로서 그것을 장려하고 이것 또한 여기에 대해서 구매 조항……

지금 우선구매제 말씀하셨는데요. 복지부 소관 법안에 보면 거기에는 일정 비율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저는 일정 비율을 포함하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임의 규정 ‘할 수 있다’로 했을 경우에도 수용이 곤란하냐고 묻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강제 조항이라곤 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우선구매라는 것이 과연 예술품에 가능할지 그 문제도 공론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품 같은 경우는 규격화가 되어 있고 품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만 예술에는 그런 척도를 대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예지 위원 문화예술이라는 게 말씀하셨던 대로 상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A등급으로, 1등급으로 여겨지는 예술 작품이 누군가에게는 원치 않는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페널티라든가 강매…… 페널티를 이용한 강제 강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몇 %의 비율을 지켜야 한다라는 강제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공산품과 비교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두 가지 사안입니다. 예술 작품도 예술성을 띤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예술 작품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쉽게 법에서 규정해서 하고 있지요.

이 법의 기본 목적을 보면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태조사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지원하고 또 기본계획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것의 하나의 방법으로, 물론 제가 진흥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더 다른 부처와의 의견 조율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올려 달라고 부탁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이 내용에 제가 문체부의 이런 의견을 받을 줄은 몰랐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활동 기회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가 추천해서 문화예술 작품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 자체가 홍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또 판로 개척 마케팅에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정리해 주시지요.

○김예지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페널티가 있다면 강매가 되겠지만 이것은 선택권과 재량권이 제한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임의 규정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홍보와 다른 기관, 다른 국민들, 다른 업체 등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도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또한 장애예술인 창작물은 문학, 미술, 음악, 공연…… 공연도 여러 가지 공연이 있지요. 뮤지컬, 무용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권도 제가 제한하지 않았습니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빈껍데기인 장애예술인 지원법,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이 지원법을 채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는 기점으로 만드셔야 하지 않나 합니다.

○소위원장 박정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 차관님, 사실은 장애인 예술계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사안이에요, 이 부분이. 장애체육인과 비교해 봐서 복지 혜택이라든지 정부 지원 혜택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부분이 이런 정도고.

유사한 법률을 보면 단정적으로 ‘구매하여야 된다’ 이렇게 문구를 정한 법률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창작물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에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중앙부처에 따라서 일정 부분 물품이나 공연과 같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 거기서 하는 공연예술의 일정 비율을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경쟁입찰을 했을 때 일정 부분 가점을 준다든지 우선 배려한다든지 그런 필요한 조치를 각각에 좀 자율적으로 넣어 주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 법률 조항을 채울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정부 측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이 건에 대해서 정부 측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해 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37항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제작물에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최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 영역에서 활동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동 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이용하여 제작한 결과물이 아닌 유통 채널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제작물의 예시로 규정하는 것은 현행법 규정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부모가 아동을 촬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등 친권자 등의 아동 보호나 수익 배분

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안 제2항 및 제3항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동영상 촬영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또 의사표시에 반하는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데 가정 내에서의 촬영이 당초부터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지 또는 아동의 의사표시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한 안 제4항 및 제5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자신의 수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를 우려해서 친권자라도 임의로 인출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는데 민법 관련 조문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정대리인의 관리·처분 권한 및 사적자치의 원칙과의 충돌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40조는 안 제21조의2의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으로서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동영상의 범위 등이 불분명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 이 법안도 여러 가지, 정부 측이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7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부 측과 상임위에서 검토한 내용 중 이견이 전혀 없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시간상 가능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환 1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 1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강경환 차장님 들어오셨지요?

○문화재청차장 강경환 예.

○소위원장 박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소위 심사자료 2권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정의에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려는 것으로, 이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에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 등이 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법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서 문화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등 중요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종합적·체계적인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현행법 제11조제8항 단서 규정을 통해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서 정한 허가 기준을 벗어난 조례를 정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동 단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조례를 통해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경우에도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법률에서 정한 허가 기준을 벗어난 조례를 정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는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청차장 강경환 정부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이 부분은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던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문화재청장이 하도록 한 부분인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단은 인허가권을 문화재청장으로, 자치단체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단체하고 최소한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가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문화재청장이 이렇게 수립할 경우에는 계획의 수립 과정에 있어 가지고 주민 의견이 반영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또 그 계획 자체의 실행에 있어 가지고도 지역주민이나 자치단체장의 반대로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8조 3항에도 보면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삭제했어. 그래서 이 부분도 주민 의견을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현행대로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정 정부 측 말씀해 보세요.

○문화재청차장 강경환 문화재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왕경 특별법에 의한 왕경계획에도 수립권자를 다 문화재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보존법도 다른 상위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문화재청장이 수립하는 것이 절차나 위계상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개별 시행계획 수립 때 다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그렇게 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수립권자를 문화재청장으로 하는 것은 지자체도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자체의 의견은 저희가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지자체 의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그 내용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김승수 위원 일단 법에 인허가권을 문화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배제가 된단 말이지요. 이것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주민 의견 수렴도 필요할 경우 듣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삭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보면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정 수정의견 내실 수 있으세요?

○문화재청차장 강경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지자체 의견들을 절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그러면 다음에 다룰까요?

○김승수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박정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및 제40항, 2건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먼저 도종환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개정안 제6조의2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가 개발 행위를 위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별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문화재의 분포·매장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조승래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서 인골, 미라 등 역사적·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중요출토자료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하며 또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관련 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대한 수정의견으로는 연구 및 보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출토자료위원회의 별도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인골, 미라 등 고생물유체는 발굴 이후 빠른 속도로 열화(劣化)가 진행되어 신속한 판정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별도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해서 문화재청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문화재청장이 판단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청차장 강경환 정부는 도종환 의원님과 조승래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정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및 제40항, 2건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 것을 확인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41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41항 가기 전에, 간단한 자구 수정 부분이 있는데 이게 빠져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현상(現狀)”에서 한자를 삭제하는 부분인데, 이미 안 제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자구 수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종환 의원안, 무형문화재 보전·진흥법 관련해서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서는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는데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종목 지정 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서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동 법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 등 용어의 뜻을 정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경우에도 전승공동체를 정의 규정에서 종목지정 국가무형문화재 관련 규정을 인용해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박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이어서 뒷부분……

○소위원장 박정 더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24페이지 부분이 있습니다.

안 제47조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을 ‘유네스코 협약’으로 약칭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고요.

그리고 개정안 제47조의2는 국가가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또 국제 전문가단체 등과의 협력관계 증진과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재정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고 또 정부는 국제협력 관련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청차장 강경환 정부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저도 유네스코 협약과 체계를 맞춘다는 그런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전승공동체라는 게 결국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리랑’이라든지 이런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데 대해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특정 협회나 아니면 특정 지역 단위나 그런 법인 같은 주체가 만들어져야지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는가요?

○문화재청차장 강경환 지금도 전승공동체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유자·보유단체로 인정되지 않은 아리랑이라든지 제사와 같은 경우는 관련되는 협회나 단체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법적 규정이 마련된다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예산 지원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면 정의 규정이라든지 행정적인 필요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차장 강경환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7항까지 6건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34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마한역사문화권을 전남 일대로 한정하고 있는데 윤영덕 의원안은 여기에 광주 지역을 추가하고 이상직 의원안은 광주와 전북을 또 문진석 의원안은 충청·광주·전북 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전남을 비롯해 광주, 전북, 충청 지역에서 마한역사문화권을 고증할 수 있는 문헌 등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문진석 의원안과 같이 충청, 광주, 전북 지역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현행법의 다른 역사문화권에 관한 규정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을 '전북 지역'으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도종환 의원안과 이종배 의원안은 고대 삼국이 통일을 위해 각축을 벌였던 전략적·지리적 요충지였던 중원 지역에 분포하는 중원역사문화권을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도종환 의원안은 중원역사문화권의 대상 지역을 충북, 강원, 경북으로 그리고 이종배 의원안은 거기에 경기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충북, 강원, 경북, 경기 지역에 중원역사문화와 관련한 유적이 상당수 분포하고 있고 또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종배 의원안과 같이 해당 지역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철기시대 강원도를 중심으로 성장하여 삼국시대 전반까지 존속하였던 예맥역사문화권을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예맥역사문화와 관련한 유적이 상당수 분포되고 있다는 점 또 강원도가 전통적으로 예맥의 영역으로 고유의 역사문화 환경적 정체성을 갖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강원 영동과 영서 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인 예맥역사문화권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안 제16조제2항은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건축, 택지 조성 등 개발행위를 착수·변경·완료한 경우에 해당 시설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발행위가 허가를 받은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16조제5항은 현행법에 따른 정비구역이 고도 보존·육성법에 따른 지정지구와 중복되는 경우에 현행법이 아닌 고도육성법에 따른 허가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그 허가 절차를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제고하고 정비구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정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조문 순서와 자구를 일부 수정해서 44페이지와 45페이지와 같이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청차장 강경환 정부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지요.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정 예,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법안 낸 것들에 대해서 일응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 보면 지금 마한역사문화권에 있지요, 차장님?

○문화재청차장 강경환 예,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삼국시대 이전 이야기를 할 때 마한·진한·변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전에 부족국가 동예·옥저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역사적으로 귀에 더 익숙한 그런 쪽의 문화권은 아직까지도 빠진 반면에 좀 생소한 예맥문화권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재청차장 강경환 지금 역사문화권법에 마한문화권은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마한은 있는데 진한·

변한은 없지요, 그렇지요?

○문화재청차장 강경환 예, 진한·변한은 가아나 신라가 다 이었기 때문에……

○김승수 위원 다른 것은 안 그렇습니까?

이게 굉장히 체계가 없고 중복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뭔가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문화재청차장 강경환 저희가 역사문화권 기초조사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종합적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새로운 문화권의 추가나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정부 의견은 다음에 더 심도 있게 다루자는 의견인가요?

○문화재청차장 강경환 아닙니다. 지금 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추후에 저희가 기초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번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통과를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문화재청에서 현재 역사문화권을 어떤 식으로, 빠진 데는 빠진 대로 약간 주목되는 데는 그걸 조정해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보고하고 법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차장 강경환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김승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승원 위원 마한의 강역에 대해서 한반도 남서쪽에 한정하는 그런 역사 인식이 저는 조금 안타까운데요. 과연 우리 마한이 광주, 전남, 전북, 경기 일원에 한정된 그런 곳에서 활동을 했을가에 대한 다른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사실 고조선이 대표로 하는 비파형 동검이라든가 그런 유물들이 만주, 요서 또 더 나아가서 산둥반도 일부에서까지 출토되는 그런 유물학적인 증거가 있는데 이 안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만이 있지만 아마 중국과의 국제적인 외교적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보면 흠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마한을 좀 다져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일단은 찬성을 하겠습니다.

사실 예맥도 저는 강원도로 안 보고 만주라든

가 연해주 쪽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아직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 한다는 게 안타깝고, 일단은 한번 개발을 해 보고 정비를 하면서 거기서 어떤 사료라든가 유물이라든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초 실력을 다져가는 차원에서는 일단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청차장 강경환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마한의 강역을 법에 의하면 전남 일대 그리고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광주, 충청, 전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마한의 강역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고 또 고고학적 조사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조사나 연구를 철저히 해서 강역이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심층적으로 더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유념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7항까지 6건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3항까지 6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먼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 의원안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안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해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재단이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또 재단의 재원조달 창구를 다변화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2개의 의원안 중에서 이용호 의원안의 별도 계정 관리 및 필요한

사항의 대통령 위임 규정과 안민석 의원안의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또 시상 예우 등과 같은 부분을 법체계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는 49페이지와 50페이지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감염병에 관한 부분인데, 다만 수정의견으로 ‘문화재 구역’이라는 정의 규정이 없는 측면 등을 감안해서 일부 자구 수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7페이지 김승수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문화재지능정보화와 문화재데이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이를 통해서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6조는 문화재지능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있어 바람직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 제22조의9 2항에서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 문화재지능정보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업무의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문화재지능정보화위원회를 신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문화재지능정보화위원회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신에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안 제22조의10은 문화재청이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 통합 관리하고 국가 등이 이를 지원·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문화재 생애주기 전반의 데이터 생산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으로 문화재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안 제22조의11은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고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문화재 보존관

리 또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 등이 확대 보급됨으로써 문화재지능정보화 추진이 기대됩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안 제22조의12는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운영과 또 이에 필요한 상호 연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서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 각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안 제22조의13은 문화재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통해서 체계적·효율적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73페이지 김승수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납세의무 이행 시 문화재자료 등을 통해서 물납을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고 또 체계적인 문화재 보호가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문화재와 관련한 조세 납부의 예외적인 사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비롯해 각 해당 세법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법률의 세금의 물납과 같은 예외적인 조세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체계상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를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청차장 강경환 정부는 이용호 의원과 안민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외재단의 기부금품 접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오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문화재구역의 감염병과 관련되는 기본계획 반영 사항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승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문화재지능정보화와 관련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등의 물납과 관련해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문화재 등의 물납과 관련한 절차와 심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에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상속세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항이라서, 그 내용 중에는 문체부장관이 심의와 관련 절차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행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내용과 정합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히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서요. 현재 권한은 문체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문체부와 실제로 문화재보호법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정 그러면 마지막 말씀하신 상속세에 근거한 문화재보호법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통과된 게 있지요, 기재부 법으로.

나머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53항에 대해서도 이거는 54항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입법조사관 오동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정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54항 다루고 나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의견 없으시면 가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1항까지 이상 4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4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현 자연유산 보존법 관련해서 소위 심사자료 3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개요 부분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작년 9월 달에 상정이 됐고 금년 4월 달에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 때는 이와 관련해서……

○소위원장 박정 수석전문위원님,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이 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다음번 법안소위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다음번 법안소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경환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 승 수	김 승 원	김 예 지	김 의 겸
박 정	유 정 주	최 형 두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상 현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 현 환
문화재청 차장	강 경 환